

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견

1. 주 문

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
아래 제안이유와 같이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

2. 제안이유

가. 요구사유

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련
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

나. 과태료 부과 현황 : 「붙임」 참조

3. 참고사항

가. 지방자치법 제41조

나.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

다.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

붙임

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자 과태료 부과현황

□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자 현황

연번	성명	직책	미제출 자료	비고
1	문혜정	前)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 미제출 사유 없음

□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

연번	성명	자료 미제출 사유	과태료 부과사유 및 결정액
1	문혜정	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 미제출 사유 없음	○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○ 위원회 의결로 500만원 부과